

『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』

효력발생연월일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
1. 최저임금액

구분	시간급	월 환산액*
모든 산업	10,030원	2,096,27원
10% 감액적용	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	

*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
-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
- ② 가사사용인
-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
3.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

- ①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(所定)근로시간(이하 “소정근로시간”이라 한다)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
- ② 상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
- ③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가.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
 - 나.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